제281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2021. 9. 8.(목)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경과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다산아트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시설대관 사용료 조정, 감면대상자 확대로 아트홀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시설대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안 제5조부터 제12조)
- 나. 사용경합 시 사용 순서 및 사용의 제한 조항 삭제
- 다. 사용료 반환 조항 조정(안 제18조)
- 사용취소 시 사용료반환 기준 완화(미반환공제금 10%이내로 조정)
- 라. 관련법령 준용 조항 신설(안 제27조)
- 마. 시설 기본 사용료 조정, 공연 횟수 추가 시 사용료 가산 삭제, 부가 가치세 징수 오류 정비(안 별표 1)
 - 시설 사용료 : 장르별·공연회수별 차등→장르·횟수무관 사용료 통일
 - 부가가치세 징수 규정 삭제(문화시설 일시대관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 사. 관람료 감면 기준 대상 확대(안 별표2)
 - 감면대상자에 고엽제 후유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 포로 추가
- 아. 그 밖에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다. 관련부서 : 문화예술과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다산아트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기관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른 권고사항 등을 반영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에 따른 임기및 해촉과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조문을 구성하였고, 안 제17조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 사용료의 반환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의 아트홀 사용료의 경우 기본 사용료가 성격과 장르에 따라 2배(현행 예: 연극 300,000원 / 대중음악 600,000원)를 징수 받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편차가 없도록 사용료를 통일하였고,

별표 2의 관람료의 감면기준에는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요금감면 누락 자치법규 정비' 권고(2020. 6. 5)에 따라 누락된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보훈단체 4곳을 추가하여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하는 등 다산아트홀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그 동안 나타난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

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별표 2의 '관람료의 감면기준' 인용 조문을 현행 제17조에서 제20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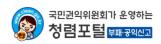
현 행	수정 안	비고
별표 2 관람료의 감면기준(<u>제17조</u> 관련)	별표 2 관람료의 감면기준(<u>제20조</u> 관련)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 국민권익위, "사용 전 취소해도 공연장 대관료 위약금 100%?" 불공정 대관제도 개선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 2020. 9. 22.(화) ■ 총

총 6쪽 (붙임 2쪽 포함)

■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제도개선과

| 과 장 조덕현 ☎ 044-200-7251

조사관 한재현 🕾 044-200-7252

국민권익위, "사용 전 취소해도 공연장 대관료 위약금 100%?" 불공정 대관제도 개선

작성

-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 어려운 상황...사용일 이전 특정 시점까지 예약 취소 시 전액 환불 -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 전 공 연장 등 공공문화시설 예약을 취소해도 대관료 전액을 위약금 으로 내야하는 불공정・불합리한 대관사용 규정이 개선된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문예회관 등을 민간 등에 대관할 때는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대관심의회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문화시설 대관 관련 각종 청탁과 특혜 시비를 없애고 공공기관에 의한 갑 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달 7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국 지방자치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문화체육관 광부 등 관계기관은 2021년 9월까지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은 자체 보유·운영하는 공연장, 전시실, 강당, 야외무대 등 문화시설을 유휴 시간대에 일정 사용료를 받고 민간 등에 대관하고 있다.

이때 대관절차나 대관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한다.

국민권익위가 전국 문화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기관이 시설 대관과 관련한 정보공개가 빈약했고 대관 공고 시에도 공공계약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불필요한 사전상담 및 대면 접수, 불투명한 대관자 심사 및 선정, 대관심의회 심사결과 미공개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각종 청탁과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었고 문화예술 시장 특성상 독점적 지위인 공공기관에 의한 갑질 피 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 공공재원이 투입된 서울 ○○극장 대관심사를 ○○협회장이 단독으로 심사하여 협회장소속 단체에게 특혜 대관해 주는 것은 부당함 (국민신문고, 2019.9.)
-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문화회관에서 대관 공연을 무리없이 진행했는데, 2016년부터 연속 5회 탈락한 것은 민원을 발생시켰기 때문으로 의심됨

(국민신문고, 2017.9.)

- ■A미술관은 사용료 정보가 없고, 환불기준 안내 없음
- B문화예술회관 등은 방문접수를 위주로 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서를 제출 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사전 협의를 해야 함
- ■C예술의전당은 작품 심사로 대관자를 선정하면서 2020년 정기대관은 공고일부터 13일, 수시대관은 공고일부터 3일 기간만 제출기한으로 정함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020.7.)

또 법령 근거 없이 특정단체에 우선선정 특혜를 제공하고 <u>동</u>일 시설임에도 공연물 성격·장르별로 최대 16배까지 과도한 금액 편차가 있었다.

이외에도 수익배분 관점에서 사용료 추가 징수, 30~50%까지 계약보 증금 요구, <u>사용일 이전 취소해도 총액의 100%까지 과도한 위약</u> 금 처리, 공공 문화시설이 면세 사업장임에도 부가가치세 징수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문화예술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지도 않은 시설물에 대한 선납액을 전액 위약금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사회 이 슈화되고 있다.

- D극단은 한국○○ 지회 및 10개 회원단체에, 'E아트홀'은 한국○○·○○총 지회 및 산하단체에 우선 대관 특혜를 주고 있음
- F아트센터 등은 법적 근거 없이 내부 규정으로 대관료 미납 또는 대관예약을 취소 하면 1~3년간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상 예식업도 90일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하지만 J예술의전당 등은 전액 환불제 자체가 없음
- 통상 거래에서 총액의 10%가 위약금 기준선인데, K극장은 사용일로부터 179일이내, N회관은 사용일로부터 90일이내 취소해도 납부액 전액을 반환하지 않음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020.7.)
- □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관공고를 공고기간・심사방법・발표일정 등 국가 계약법령의 기술평가 입찰공고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이어 비대면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전협의나 대면접수를 지양하도록 했다.

대관심의회는 외부위원이 최소 5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도 록 했다.

법령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단체에 우선대관 특혜를 제공

하거나 특정인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또 동일 시설물에 대한 다중 요금제와 요금제간 금액 편차를 최소화 하고 대관자의 판매수익 일부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용일 이전 특정 시점까지 취소하면 선납금 전액을 환불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위약금과 계약보증금 상한은 사용료의 10~20% 이내로 제한하는 등 적극행정 차원에서 대관자에게 통상적 거래조건 보다 더 유리하게 정하도록 했다.

- □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2%에 달한다.
-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문화시설 대관 제도 개선 사항이 정착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에 근거하여 시설 기본 사용료 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2021년 비용추계 산출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증감금액
기본 사용료	30,660	29,000	△1,660

4. 작성자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장 박 은 경

붙임 2 교기법령 발췌서

(혀행 조례)

남양주시 다산아트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9.02.07 조례 제1602호

(일부개정) 2019.05.16 조례 제1636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조례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11.07 조례 제17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문화 예술 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 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2. "관람자"란 유료·무료 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3.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와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산아트 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아트홀은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7에 둔다.
- 제4조(사용신청 등) ① 아트홀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
 - ② 아트홀을 사용하려는 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사용하도록 한다.
 - 1. 국가, 경기도 또는 남양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
 - 2. 국제적 수준의 공연단체나 공연자의 공연
 - 3. 정기공연 실적이 많은 공연단체나 공연자의 공연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 ③ 아트홀의 사용은 정기사용과 수시사용으로 구분한다.
 - 1. 정기사용 :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
 - 2. 수시사용 : 정기사용 공백 기간
 - ④ 시장은 아트홀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아트홀의 사용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의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아트홀의 사용범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아트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시설 : 공연장, 연습실, 분장실, 로비 및 휴게 테크 등 공통시설
- 2. 부대설비 : 무대설비, 조명설비, 음향 및 영상설비, 냉난방설비 및 그 밖에 공연·행사에 필요한 설비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트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적인 행사인 경우
- 4.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자 또는 사용신청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을 취소 하여 아트홀 운영에 불이익을 끼친 자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
- 5. 그 밖에 시장이 아트홀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사용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사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료) 시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중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 경기도 또는 남양주시가 주최하는 공연 : 전액
 - 2. 국가, 경기도 또는 남양주시가 후원하는 공연: 100분의 50
 - ② 사용료의 감면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받은 사용료 중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
 - 1. 아트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전액
 -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 3. 제4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
 - 가. 사용일 30일 전까지 : 90퍼센트
 - 나. 사용일 29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 50퍼센트
 - 다. 사용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 30퍼센트
-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람료 등) ① 시장은 아트홀의 공연 등을 관람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경기도 또는 남양주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공연 등의 경우에는 무료로 관람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확대와 아트홀의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위하여 별표 2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물 제작 등) 시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아트홀 홍보 및 제17조 회원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또는 기념품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14조(휴관) ① 아트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 2. 그 밖에 시장이 아트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3일 전까지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5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아트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1. 다른 사람에게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
 - 2.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 3.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 4. 공연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다른 관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 5. 그 밖에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1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아트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트홀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아트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 3. 책임감·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능력
 - 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 **제17조(회원제 운영)** ① 시장은 아트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획공연 등에 대하여 회원제를 운영할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에게 가입비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비 및 할인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11. 7.>
 - ③ 제2항에 따른 가입비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 11. 7>
 - 1. 가입기간 시작 전에 탈퇴를 신청한 경우 : 전액
 - 2. 가입기간 중에 탈퇴를 신청한 경우 : 가입비를 일할 계산하여 가입일부터 탈퇴 신청일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
 - ④ 그 밖에 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11. 7.>
- 제18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원활한 공연 운영을 위하여 공연 평가 및의견제출, 공연 안내 등의 업무를 하는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602호, 2019.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01호, 2019. 1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람료 감면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관람권 예매를 시작(티켓 오픈)하는 공연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트홀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트홀 사용을 신청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